

공유수면 점용·사용 변경허가 고시

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·사용 변경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1. 허가번호 및 허가연월일 : 제2026-73호(2026. 8. 7.)
2. 점용·사용의 목적 : 유선 중간 기착지(조도, 생이말, 굴송이, 생도)
3. 점용·사용의 장소 :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1번지 외 3필지 공유수면
4. 점용·사용의 면적(기간) : 7.7㎡(2026. 8. 9.~2028. 8. 8.)
5. 점용·사용 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, 주소
 - 성 명 : 부산시수협동삼어촌계(주) 대표이사 강양석
 - 주 소 : 부산시 영도구 하리해안길 17-5(동삼동)

2026. 8. 7.

부 산 지 방 해 양 수 산 청 장